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칸서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1년 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10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4
1. 명칭.....4
2. 모집예정기간.....4
3. 모집(판매)예정금액.....4
4. 펀드존속기간.....4
5. 분류.....4
6. 집합투자업자.....4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4
1. 주요 투자대상.....4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5
3. 수익구조.....6
4. 주요 투자위험.....6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7
6. 투자운용인력.....8
7. 투자실적 추이.....8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9
1. 수수료 및 보수.....9
2. 과세.....10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11
4. 전환절차 및 방법.....12

Ⅳ. 요약 재무정보.....12

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명칭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7336)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		40% 이상	주식 및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1	주식	40% 이하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6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펀드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요약

- 자산배분 시스템에 의거 주식운용비율의 조정을 통한 최적의 자산배분
- 자산(주식·채권·현금성자산)의 위험/수익 요인의 계량화 및 모형화에 기초하여 투자·운용하며, 자산(주식·채권·현금성자산)에 대해 시장상황에 맞는 투자비중 조절로 비교지수(KOSPI*30%+매경BP국공채1년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 및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30%+ 매경BP국공채1년지수*70%**
- 목표수익률 : 벤치마크 수익률+ α

□ 주식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 : 칸서스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당사 기업분석전문가가 분석한 내재가치 저평가 종목으로 업종 중립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시장 대비 초고수익 추구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및 ETF 적극 활용 : 필요시 유동성 좋은 주가지수선물 및 ETF 등을 활용하여 자산배분(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및 ETF 등 투자비중 ±30%)실시. 즉, 주식관련 자산배분 포지션은 자산총액 대비 0%~60%에서 운용함.
- 자산배분비율 재조정 : 주간/월간 단위로 재조정 실시하되, 시장 급변시 수시 자산배분비율 조정 실시

※ 기타 자세한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험관리

-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당해 펀드의 운용성과가 반드시 시장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당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및 스타일은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개별위험	발행회사 위험	채권, 주식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주식가격변동 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외화표시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부도위험	채권, 주식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운용성향 위험	적극적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	투자원금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며 또한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보통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시장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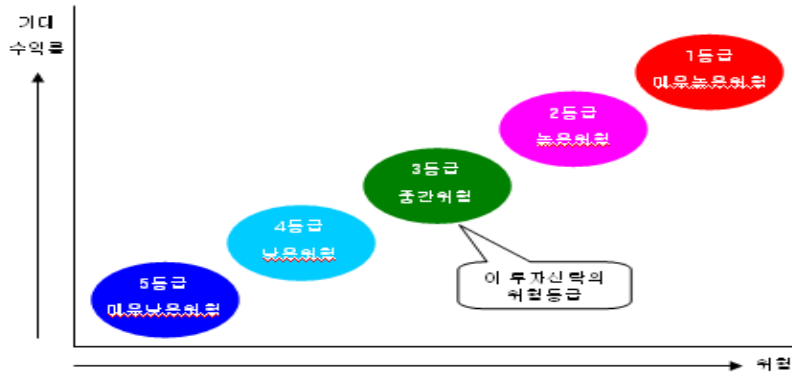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6. 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유승우	1962	주식·채권 운용본부장	11개	6,412억	대신투신 주식운용팀장(5년7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본부장(7년2개월)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2011.9월말 기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 및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2010.10.01 ~ 2011.09.30	최근 2년 2009.10.01 ~ 2011.09.30	최근 3년 2008.10.01 ~ 2011.09.30	최근 5년 2006.10.01 ~ 2011.09.30	설정일 이후 2006.06.01 ~ 2011.09.30
투자신탁	-1.93%	4.85%	4.08%	2.54%	2.87%
비교지수	1.08%	4.19%	6.42%	5.73%	5.84%

주1) 비교지수 : KOSPI*30%+ 매경BP국공채1년지수*7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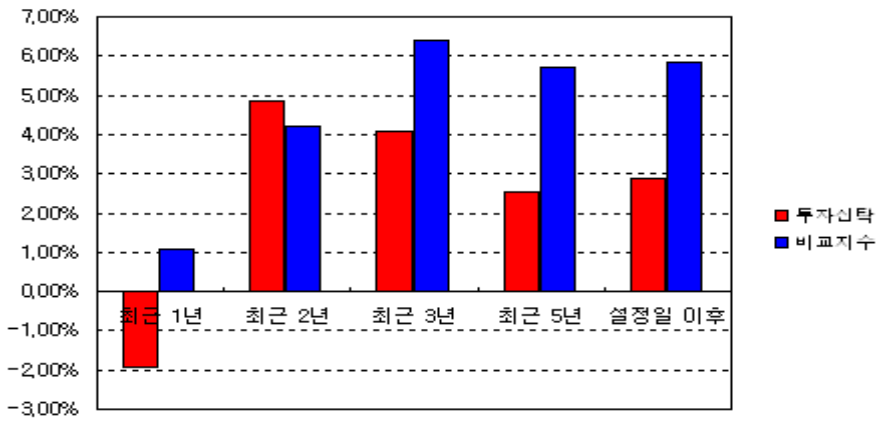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기간	최근 1년차 2010.10.01 ~ 2011.09.30	최근 2년차 2009.10.01 ~ 2010.09.30	최근 3년차 2008.10.01 ~ 2009.09.30	최근 4년차 2007.10.01 ~ 2008.09.30	최근 5년차 2006.10.01 ~ 2007.09.30
투자신탁	1.93%	12.11%	2.54%	-7.43%	8.65%
비교지수	1.08%	7.39%	11.02%	-4.51%	14.83%

주1) 비교지수 : KOSPI*30%+ 매경BP국공채1년지수*7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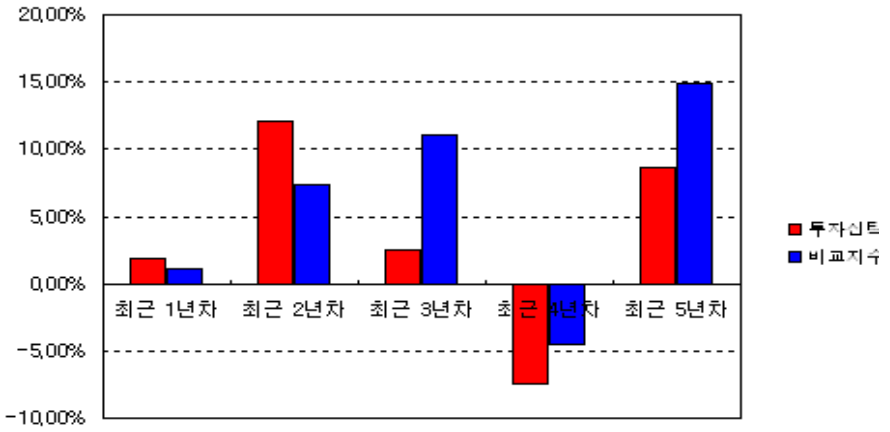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454%	매1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005%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연 1.505%	-
증권 거래비용	연 0.233%	사유발생시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써 2011.09.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11.09.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다이나믹시스템	154	486	852	1,940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가.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나.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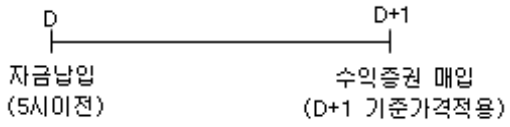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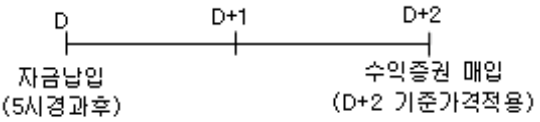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②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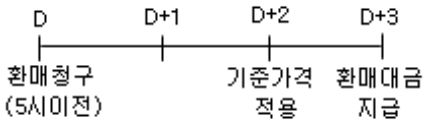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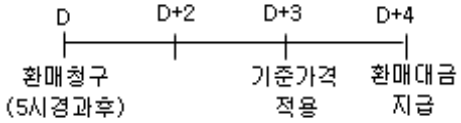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 기 20110531	제 4 기 20100531	제 3 기 20090531
Ⅰ.운용자산	1,688,507,879	1,785,500,038	3,380,966,304
증권	1,424,076,408	1,729,530,677	2,074,635,799
현금 및 예치금	64,431,471	55,969,361	1,306,330,505
기타운용자산	200,000,000		
Ⅱ. 기타자산	5,911,290	41,503,307	10,831,148

자산총계	1,694,419,169	1,827,003,345	3,391,797,452
II. 기타부채	2,174,140	17,404,899	4,483,570
부채총계	2,174,140	17,404,899	4,483,570
I. 원본	1,535,381,433	1,913,170,421	3,726,366,579
II. 수익조정금	-11,192,644	114,343,780	115,511,639
III. 이익잉여금	168,056,240	-217,915,755	-454,564,336
자본총계	1,692,245,029	1,809,598,446	3,387,313,882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20100601- 20110531	제 4 기 20090601- 20100531	제 3 기 20080601- 20090531
Ⅰ. 운용수익	298,297,405	162,490,796	-395,566,114
이자수익	40,866,193	70,515,387	117,201,309
배당수익	9,046,540	10,284,800	18,987,363
매매/평가차익(손)	247,871,035	81,382,345	-532,331,066
기타이익	513,637	308,264	576,280
II. 운용비용	26,669,190	41,353,854	58,998,222
관련회사보수	26,528,780	41,080,394	57,758,117
기타비용	140,410	273,460	1,240,105
III. 당기 순이익	271,628,215	121,136,942	-454,564,336
* 매매회전율	341	250	354
* 매매수수료	4,087,067	3,074,343	9,203,460